
문서번호 : 14-04-사무-02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고발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4년 4월 15일(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18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규탄 및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 개최

1. 민주 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2014년 4월 15일 오후 1시 10분부터 대검찰청 앞에서 어제 검찰이 발표한 <화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수사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서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갑근 및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최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 이시원 검사 및 이문성 검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3. 윤갑근 및 수사팀에 대한 고발의 요지는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하여 국가보안법 제11조를 위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의 요지는 소위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건)과 관련하여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거를 날조하였거나 이에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발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모임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니라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증거조작과 간첩사건조작을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 모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모임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다만, 특별검사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기에 우리 모임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에 증거조작 관련 수사를 담당할 검사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5. 우리 모임은 경찰이 자신의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 사건의 수사를 통해 보여주기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우리 모임의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에 대해 귀 언론단체의 많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주민 변호사
- 모두발언 : 최병모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장)
- 고발 요지 설명 : 이광철 변호사
- 규탄발언1 : 이석범 변호사
- 규탄발언2 : 이재화 변호사
- 규탄발언3 : 권영국 변호사
- 마무리 발언_민변 향후 계획 : 김도형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이후 서초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별첨: 고발장 참조

2014. 4.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34(서초동, 신정빌딩) 5층
대표자 회장 장주영
담당자: 이광철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 피고발인
1.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2.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3.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4. 최 모 국가정보원 대공수사단장
 5. 이시원 검사
 6. 이문성 검사
 7. 윤갑근 검사
 8. 성명불상 검사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I.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1. 고발인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지난 1988년 결성된 변호사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들 중 피고발인1 내지 4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발인5 및 6인 검사인 자들로서,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3. 피고발인들 중 피고발인7은 대검 강력부장으로서는 이하에서 살피게 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의 팀장의 지위에 있는 검사장인 사람으로 국가보안법 제11조가 금하는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지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자이고, 피고발인8은 위 수사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로서 피고인7과 함께 직무를 유기한 자입니다.

II. 국가정보원 소속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검찰은 2014.4.14. 유우성씨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조 증거제출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자들 외에 대공수사국 권세영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선양 영사관의 이인철 영사 그리고 이들의 직속상관인 이재운 대공수사처장을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그런데 국정원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조직구조와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2급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뒷선의 승인 없이 기획담당 과장에 불과한 자가 수 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증거를 조작하고 선양총영사관의 영사에게 증거조작에 가담할 것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인사권까지 행사하여 이 모 영사를 선양 영사관에 파견 보낸 사실은 국정원 지휘부에서 충분히 알았거나 또는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발 외 이재운 처장이 4급인 대공수사국 김보현(48·구속기소) 과장, 권세영(51·시한부 기소중지) 과장과 함께 증거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국정원에서 파견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있는 이인철(48) 영사에게 전문으로 증거조작 관련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은 2급 이상의 지휘부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전문을 보내도록 결재한 피고발인4 최 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을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7 윤갑근(50) 수사팀장은 "최 단장은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결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내용도 모른 채 '그냥 결재했을 뿐'이라는 검찰의 설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증 제2호증 한겨레 기사)¹⁾. 또한 증거조작에 대한 비용 지급 등 공작금 또한 2급 이상의 지휘부가 결재해야만 집행된다는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2761.html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점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자들 외에 피고발인4 최 모 대공수사단장, 피고발인3 성명불상의 대공수사국장을 포함하여 피고발인1 남재준 국자정보원장 및 피고발인2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의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과 기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Ⅲ.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건) 수사 및 공판 관여 검사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증거날조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건)을 수사하였고, 현재까지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가 증거날조를 알았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증거날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IV.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는 이미 2013. 6.경 대검찰청에서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했음에도,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정원을 통해 출입경기록을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출입경기록을 제출받아 그 가운데 위조된 증거(검찰에 유리한 증거)만을 2013. 11. 1.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스스로도 의심스러워 화룡시공안국에 확인공문을 보낸 사실과 화룡시에서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2013. 12. 6.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시하였고(여권기록과 다른 점, 화룡시, 연길공안국 동영상 포함), 증거위조를 예고한 정보원의 사례를 알려주며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증거로 제출하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2013. 12. 18.경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별다른 검증없이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는 중국정부 위조 회신 다음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날(2014. 2. 15.) 작성한 내부대책문건에 여전히 국정원에서 제공할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위조문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가 제출한 중국 위조공문서는 영사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화룡시공안국의 회신문은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도 위 증거위조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위조행위를 인식하고 묵인하였거나 미필적 고의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정원의 증거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던 것인지(국가보안법 증거날조죄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증거의 사용 -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 일체 -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거위조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사 담당검사들이 사전에 국정원의 증거위조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증거제출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사는 문제가 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기되었던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위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담당검사들은 위조 의혹이 있는 증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기는 커녕 이를 해태하고, 오히려 재판부에 계속하여 위 증거들이 공적 루트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된 것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를 계속하여 유지하였는바, 이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증거은닉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서울고등법원 2013노2728호 사건) 기소 전 수사가 진행될 당시 담당검사였던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는 국가정보원에 파견근무를 나가 있는 상태로, 처음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에 관여, 지휘하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통화내역조회를 신청한 당사자로서 2012.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12. 당시 이미 통화내역 결과를 통해 고발외 유우성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는 2012. 12.경 KT 통신회사 등에 대한 유우성의 통신사실자료 확인 요청을 하였고, 당시 회신된 유우성의 통화내역을 보면, 유우성이 2012. 1. 23.경 중국에서 통화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즉,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를 비롯한 유우성 관련 검찰수사팀은 모두 2012. 1. 23.경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객관적 사실과는 정 반대로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이 2012. 1. 23.경 북한에서 보위부 사람을 만나 지령을 수수하고, 휴대폰 등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보위부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발인5 이시원 검사 및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 유우성의 대공수사팀이 2012. 12. 당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2012. 1. 23. 유우성이 중국에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통화내역 등 증거를 은닉하고, 2013. 2. 26. 공소장에 2012. 1. 23. 유우성이 북한에 있었다고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위반(무고·날조)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IV.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1.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 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및 기소, 그리고 1심 재판
 - 2013. 1. 20.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북한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중국명 리우찌아강)을 체포하고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2. 2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유우성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이 사이 국정원은 2012. 10. 31. 한국에 입국한 탈북화교이자 유우성의 동생인 유가려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보호하면서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국정원은 유가려에게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하여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를 진술하라고 강요받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 이에 유우성의 변호인단은 2013. 4. 27. 국정원의 유가려에 대한 가혹행위를 가하고 허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위 자백을 받아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2. 1. 22.과 23. 유우성이 북한에서 찍었다면서 제출한 증거 등이 위조되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정과 법정외 공방 끝에 2013. 8. 22.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유우성의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은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검찰의 항소 및 증거조작 의혹의 제기

-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 및 변호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2013노2728호 사건)가 2013. 10. 2. 첫 기일을 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찰은 유우성이 2006. 5. 23. 북한에 밀입북한 후 중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포섭되었다면서 2006. 5. 27. 유우성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허룡(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과 <허룡(和龍)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두 종의 중국 공식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아래 그림 1은 <허룡(和龍)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입니다.

至 2006 年 12 月 31 日 期间, 有下列 出入境 记录。

人员姓名	出入标识	国籍/地区	性别	出生日期	证件类别	证件号码	出入时间	出入口岸	交通工具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6-10-15:17:22	三合	
刘家刚	出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1:16:36		
刘家刚	入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0:24:55		
刘家刚	出境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3-14:54:05		
刘家刚	入境	中	男	1980-10-26		148757768	2004-03-16-10:44:28	三	

- 위 그림 1에서 유우성 씨가 2006. 5. 23.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出), 같은 달 27. 다시 중국으로 나옵니다(入). 그리고 27일 바로 다시 유우성 씨가 북한으로 들어갔다(出), 6. 10. 중국으로 나옵니다(入). 이 자료를 보면 유우성이 북한에 두 번 들어간 것이 됩니다.

- 여기서 2006. 5. 27. 유우성이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는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만일 이때 유우성 씨가 다시 북한으로 입북하지 않았다면 이때 보위부에 포섭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토대가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유우성이 2006. 5. 23.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 다시 북한에 들어간 일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두종의 출입경 기록 및 공문이 위조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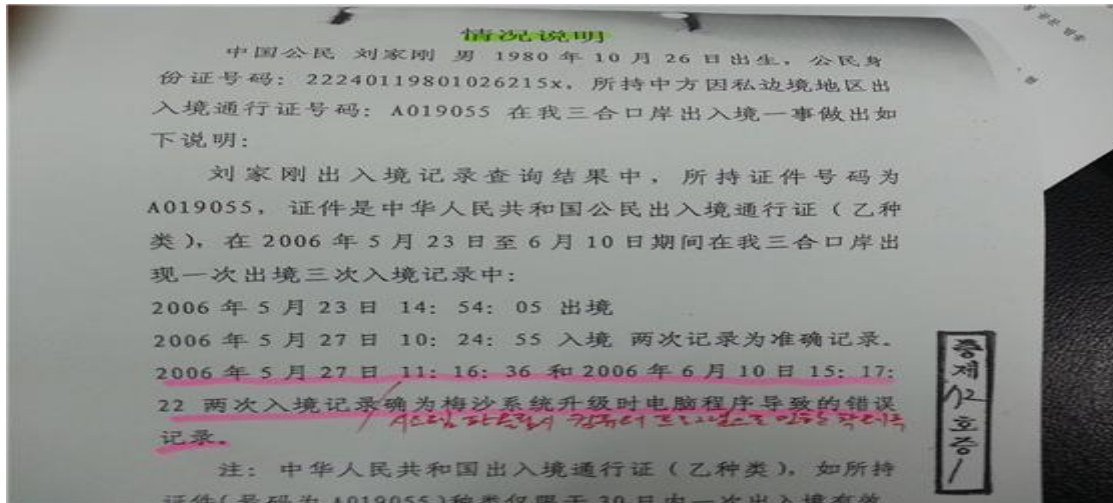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아래 그림 2. 연변조선족 자치주公安국 명의의 유우성 출입경 자료, 3. 공문입니다.

证号码 22240119801026215x; 在 1998 年 1 月 1 日至 2013 年 11 月 3 日期间, 有下列出入境记录。

人员姓名	出入标识	国籍/地区	性别	出生日期	证件类型	证件号码	出入时间	出入口岸	交通工具	前往地/出发地
刘家刚	入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6-10-15:17:22	三合		
刘家刚	入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1:16:36			
刘家刚	入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7-10:24:55			
刘家刚	出	中国	男	1980-10-26		A019055	2006-05-23-14:54:05			

- 이 자료를 보면 유우성이 2006. 5. 23.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出), 같은 달 27.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것(入)까지는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5. 27.과 6. 10. 두 차례 유우성 씨가 또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1종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왜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가 연변조선족 자치주公安국 명의의 그림 3입니다.



- 이 자료에 의하면 2006. 5. 27.과 6. 10. 두 차례 유우성 씨가 또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것으로 기재된 기록은 "시스템 판올림(업데이트)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착오기록" 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산오류라는 것입니다. 결국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 조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및 정황설명서가 오류라는 내용의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검찰 제출의 3종의 문서는 모두 위조 또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이하 위 3종의 검찰 제출 문서를 이 사건 3종 문서라고 하고, 그 날조행위를 이 사건 증거날조행위라고 합니다).

다.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과 이후의 논란

- 이러한 법정 공방의 와중에 담당재판부는 그해 12. 23. 변호인 및 검찰 요청에 따라 양 쪽에서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의 출입경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중국 측에 요청하게 되고, 2014. 2. 14.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서, 싰허(三畝)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유우성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고 있던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이 사건 3종의 문서는 중국 기관이 정식 발급한 것이라며 위조 의혹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2. 18. 김진태 검찰총장은 증거조작 의혹 관련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피고발인⁷ 윤갑근 검사를 진상조사팀장으로, 피고발인⁸ 성명불상의 검사를 수사팀원으로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라. 증거조작의 상세한 내용

1) 법정 공방에서 나타나는 증거조작의 혐의

- 증거자체 혹은 법정공방을 통하여 변호인의 입증에서 밝혀진 이 사건 증거날조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허룽(和龍)‘시’ 공안국은 출입경기록에 대한 공식발급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출입경기록은 상위 관청인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일괄관리하고 있다는 점,
- 둘째,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은 위와 같은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준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
- 셋째, 검찰이 제출한 2006. 5. 27.자 출입경기록을 원본과 비교하였을 때 위조·변조사실이 명백한 점,
- 넷째,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도장이나 공증방법은 실제 중국에서 상용되는 것이 전혀 아닌 점,
- 다섯째, 검찰은 항소심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미 수사과정에서 입수하여 두고 유우성에 대한 피의자신문 당시 유우성에게 제시한 점
- 이상의 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위 출입경기록 등 이 사건 3종의 문서는 유우성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의 입증을 위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관련하여 증 제3호증으로 제출하는 연합뉴스 2014. 3. 13.자 연합뉴스 기사 출력물²⁾을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보면, 검찰이 '서울시 간첩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서 '조작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측의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위조된 기록을 잇따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 의견서를 보면, 변호인단은 '국정원 협조자라는 신원 미상의 남성이 유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이 변조돼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보면 수사 및 공판에 관여한 피고발인5 이시원,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는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3종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미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것입니다.

2) 언론보도 및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혀진 증거조작의 혐의

- 당시의 언론보도, 그리고 중국 정부의 회신 이후의 국회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볼 때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3종의 문서가 조작되었다는 점은 익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2. 18.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양(瀋陽)총영사관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서는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1건뿐이라고 언급하였고(증 제4호증 연합뉴스 2014. 2. 18.자 기사출력물³⁾), 2. 21. 조백상 선양 총영사도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위조 의혹이 제기된 문서 2건은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입수한 것으로 중국 공안당국을 통해 입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접촉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문서를 입수했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증 제5호증 연합뉴스 2014. 2. 21.자 기사출력물⁴⁾).

- 특히 3. 5. 이 문서의 입수경로에 있어서 국정원의 내부협조자로 알려진 김모가 검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흥기로 자살을 기도하면서 호텔 벽에 피로 '국정원, 국조원'이라고 쓴 부분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남긴 4가지 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3종의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증 제6호증 연합뉴스 2014. 3. 6.자 기사출력물, 증 제7호증 연합뉴스 2014. 3. 7.자 기사출력물⁵⁾). 즉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보면 김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05284>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62609>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69329>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393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4653>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봉급'은 국정원의 정보원 또는 협조자로서 받는 활동비로 해석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작증거의 대가가 아닌지 매우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마. 소결론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첫째, 이 사건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에 관여한 피고발인5 이시원, 피고발인6 이문성 검사는 사전에 자신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3종의 문서가 위조·조작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나아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의 공소유지를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 둘째, 이러한 이 사건 증거날조행위는 단지 위 두 사람의 검사 뿐만 아니라 원장 남재준을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 조직이 총동원되어 이루어진 조직적인 범죄행위라는 점입니다. 특히 내부 협조자 김모에게 봉급 3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정원의 기간조직이 동원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형사책임 - 국가보안법 제11조의 특수직무유기

가. 이 사건 증거날조행위의 죄책

1) 해당 법률규정

-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제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증거의 날조

- '날조'란 증거를 허위로 조작해 내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상(제155조제1항)의 '위조·변조'는 물론 '위조·변조한 증거의 사용'도 이에 포함됩니다⁶⁾.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 여기서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데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계없는 물건을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모두 위조라 할 수 있습니다. '변조'란 진정한 증거에 가공하여 그 효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부를 불문합니다.

- '사용'이란 진정한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제공의 상대방은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경우 법원이 될 것이며, 공소제기 후에 검사에게 위조 증거를 제공하는 것도 사용에 해당합니다.⁷⁾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고, 그 일부가 고소인이 2006. 5. 27. 11:16:36 북한에 출경한 것처럼 변조되어 있으며, 찍혀 있는 공증도장 역시 위조된 것으로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인8 성명불상 검사의 진상조사팀의 법률상 의무와 그 의무의 의도적 불이행

- 그렇다면 피고발인7 윤갑근이 팀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은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수사검사 피고발인5 이시원 및 피고발인6 이문성, 피고발인1 남재준을 수장으로 하는 대공수사라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이번 증거조작 및 간첩조작의 전모를 밝혔어야 합니다.

- 특히 국가보안법 제12조가 무고·날조죄를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제약을 가하거나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으로 몰아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반국가사범에 대한 국가형벌권행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피고발인5 이시원, 피고발인6 이문성 두 검사가 이 사건 3종의 문서를 직접 조작·날조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여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 있는 국정원을 지휘감독하고 국정원이 송치하는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검사가 위조·날조사실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행위의 부작위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의 법상 직책은 무고 및 날조행위를 방지할 법령상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7 윤갑근이 팀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은 피고발인5 이시원, 피고발인6 이문성 두 검사는 물론 피고발인1 남

6) 황교안, 「국가보안법」, 박영사, 2011, 517쪽

7) 이회창, 「주석 형법Ⅲ [각칙 (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384~385쪽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재준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라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3종의 문서의 위조 및 사용에 가담한 내부 협조자 김모, 이인철 영사,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권모 과장에 대하여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증 제8호증 연합뉴스 2014. 4. 14.자 기사출력물⁸⁾)

다.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인8 성명불상 검사의 죄책 - 국가보안법 제11조의 특수 직무유기

1) 관련 법규정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인8 성명불상 검사의 죄책 1 - 수사검사 및 국정원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무 불이행의 직무유기

- 앞서 본대로 피고발인7 윤갑근이 팀장으로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사건 수사팀은 피고발인5 이시원, 피고발인6 이문성 두 수사검사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그쳤고, 피고발인1 남재준 등 대공 수사라인에 대하여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이들 수사검사 및 국정원의 대공 수사지휘라인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3종의 문서조작 및 날조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법원을 기망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부작위에 의한 국가보안법 제12조의 무고·날조의 죄를 저질렀거나(검사들), 직접적인 조작 및 날조에 가담한 자들의 상부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들(국정원의 대공 수사지휘라인)입니다.

-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인8 성명불상 검사는 이들 검사와 국정원의 대공 수사지휘라인의 이러한 범죄적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특히 남재준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라인에 대하여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국가보안법 제11조가 명언하고 있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특수직무유기의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61536>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3)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일8 성명불상 검사의 죄책 2 - 국가보안법 미적용의 직무유기

- 앞서 본대로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일8 성명불상 검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3종의 문서의 위조 및 사용에 가담한 내부 협조자 김모, 이인철 영사,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 권모 과장에 대하여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등의 죄목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하여 피고발인7 윤갑근은 지난 3. 18.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마치 형법상 증거위조죄와 국보법상 날조죄가 구성요건이 똑같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사전적 의미 그대로 '위조'는 그림자라도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즉 위조의 대상인 원본을 전제한 개념이라는 의미)이라면 '날조'는 말 그대로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증 제9호증 아시아투데이 2014. 3. 18.자 기사출력물⁹⁾).

- 그러나 이러한 피고발인7 윤갑근의 주장은 피고발인7 윤갑근이 속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황교안 장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법해석으로써, 법리적으로 수증하기 어려운 궤변적 주장입니다. 관련하여 한 인터넷 언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증 제10호증 뉴스토마토 2014. 4. 1.자 기사출력물¹⁰⁾).

황 장관의 저서에서도 "국보법상 무고·날조는 '국보법의 죄'에 한하고 국보법 이외의 다른 법규, 즉 형법에 의해 처벌될 것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 등을 적용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백한 국보법이다. 검찰은 유씨를 기소하면서 국보법상 '간첩, 특수잡임 및 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네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게다가 이번에 위조로 드러난 문건 역시 유씨의 '국보법 위반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이 적용될 여지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유(有)에서 (無)의 창조론'으로 한때 논란이 되었던 '날조'의 개념도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볼 때 국보법상 규정한 '날조'의 개념에 포섭된다

-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일8 성명불상 검사가 위와 같은 법무부 장관의 법리해석과 배치되게 이 사안에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제11조가 명언하고 있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역시 특수직무유기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¹¹⁾(증 제11호증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

9)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318010009612>

10)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56809>

11) 관련하여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은 4. 14. 긴급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발인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증 제9호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견 자료집).

4.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7 윤갑근 및 피고발인8 성명불상 검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다 구체적인 증거

검사에 대한 혐의와 관련하여 총 4가지 문서 중 하나만 위조사실을 알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 검사가 증거위조를 알았을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는 2013. 10. 중순경 이미 서로 내용이 다른 출입경기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증거(검찰에 유리한 증거)만을 2013. 11. 1.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마저도 스스로 의심스럽다고 여겨 화룡시공안국에 확인을 거쳤다고 하나 확인이 오기도 전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화룡시 회신문은 2013. 11. 27.자).

둘째, 검사는 2013. 7.경 중국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방법으로 출입경기록 발급이 거절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지속적으로 속였다. 만약 검사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미필적으로나마도 몰랐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셋째, 2013. 12. 6. 공판에서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시하였고(여권기록과 다른 점, 화룡시, 연길공안국 동영상 포함), 증거위조를 예고한 정보원의 사례를 알려주며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증거로 제출하라는 경고를 하였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2013. 12. 18.경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확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증거로 제출하였다.

넷째, 검사는 중국정부 위조 회신 다음 날(2014. 2. 15.) 작성한 내부대책문건에 여전히 국정원에서 제공할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위조문건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다섯째, 검사가 제출한 중국 위조공문서는 영사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 스스로 이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화룡시공안국의 회신문은 원본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팀이 담당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유우성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되는 사건이다. 검찰 수사팀은 만약 담당검사를 기소하는 경우 검찰 지휘부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검사가 법원을 기망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이러한 위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방법은 고발인 보충조사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1. 증 제2호증 한겨레 기사
1. 증 제3호증 연합뉴스 2014. 3. 13.자 연합뉴스 기사
1. 증 제4호증 연합뉴스 2014. 2. 18.자 기사출력물
1. 증 제5호증 연합뉴스 2014. 2. 21.자 기사출력물
1. 증 제6호증 연합뉴스 2014. 3. 6.자 기사출력물
1. 증 제7호증 연합뉴스 2014. 3. 7.자 기사출력물
1. 증 제8호증 연합뉴스 2014. 4. 14.자 기사출력물
1. 증 제9호증 아시아투데이 2014. 3. 18.자 기사출력물
1. 증 제10호증 뉴스토마토 2014. 4. 1.자 기사출력물
1. 증 제11호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진상조사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4. 15.

고발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경찰서 귀중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